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15. 6. 23.
1차 개정 2016. 2. 15.
2차 개정 2018. 2. 15.
3차 개정 2021. 4. 13.
4차 개정 2023. 12.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은 본 원에서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유치원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44-5에 위치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본원 원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5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학기) 본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제2학기는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이듬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원장 재량휴업일
 5. 하계, 동계, 학년말 휴가
- ② 제1항 5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 2. 3. 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 ③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8조(학급편제)

- ① 본 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배정 학급으로 한다.
- ② 학급은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으로 편성한다.

제9조(원아정원)

- ① 원아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원아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내용

제10조(교육내용)

- ①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유치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시간)

- ① 본원의 하루 수업 시간은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 ② 1일 교육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수업운영방법)

- ① 수업 운영은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활동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흥미 영역과 교재·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 ④ 교육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한다.
- ⑤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 자료를 사용한다.
- ⑥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제14조(방과후과정 운영)

- ①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당 해 년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② 방과후과정운영비의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방과후과정 수익자 부담금 책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9월 30일까지로 하며,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 ②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③ 신입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6조(재입학) 만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전학)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8조(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 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 및 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①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유아

제19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 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 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0조(적용)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 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따른다.(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1조(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21조 제1항 10호에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예시)】

요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반복적 지각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안전 보호장구 착용없이 키보드 등을 이용한 출입 (도보 등하원이 원칙)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3	시설 이용 (예)타 학교급 시설 이용시 안전 문제 등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
4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 시설 파손	.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유아와 보호자 상담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 는 행위) (예>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 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참해로 판단하여 조치
6	기타 교육적 판단에 따라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 우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참해로 판단하여 조치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2조 (분리보관 가능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22조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예시)】

요건		보관 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크고 무거운 키링,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1일	교무실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술, 담배 등			
3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신용카드류, 현금, 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등	활동 시간	교실 또는 유아 가방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 - 꼭 사용해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예) 당뇨 유아- 혈당 체크 사용

제23조(기타) 이 규칙 외의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24조(개념) 유아(학부모)의 필요에 의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5조(지침)

- ①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로 한다.
- ② 신청서는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유아)가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④ 유치원의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6조(학습 형태)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견학 활동
- ④ 체험활동
- ⑤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

제27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학습
- ② 유치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유치원 밖 활동

제28조(결과 처리)

- ① 신청서와 보고서 등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제9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9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유치원의 장이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시기)

-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수업료의 반환)

-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3조(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교육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비용징수 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

고 회계처리 절차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및 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의한다.

제10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35조(연수연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한다.

제36조(교직원의 상벌) 교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원내 교직원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37조(근무규정)

-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의 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사항은 유치원 교육계획,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규칙개정 절차

제38조(규칙개정 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의 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별표1]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

상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 제4조제10호, 제8조제4항, 제13조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